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8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김장겸 · 조지연 · 주호영
강대식 · 이인선 · 강명구
박덕흠 · 서천호 · 안철수
구자근 · 김재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과거 해킹이 시스템 일부에 침입하는 단편적 불법행위였다면,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의3 및 제6조제20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7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침해사고조사관

제6조에 제2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3. 제5조제23호의3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3조제6호에
규정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 ----- ----- ----- ----- ----- ----- ----- ----- ----- -----.
1. ~ 23의2. (생 략) <u><신 설></u>	1. ~ 23의2. (현행과 같음) 23의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
24. ~ 53. (생 략)	24.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20의2. (생략) <u><신설></u> 21. ~ 50. (생략)	1. ~ 20의2. (현행과 같음) <u>20의3. 제5조제23호의3에 규정 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 호까지 및 제73조제6호에 규 정한 범죄</u> 21. ~ 50. (현행과 같음)
---	---